

일반임기제(보건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일반임기제(보건7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국립농업과학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응시 코드	근무예정기관	근무예정 지역
보건관리	일반임기제 보건7급	4명	A	국립농업과학원(1) 국립식량과학원(1) 국립원예특작과학원(1) 국립축산과학원(1) (각 기관 운영지원과)	전북 완주군

*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에 대해 기관 및 개인희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관 지정예정

나. 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및 직급	담당예정업무
일반임기제 보건 7급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직원 보건관리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분석 -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유해요인 등 유해요인 조사 및 보건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호	62,019	29,762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4.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2.3.3.)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한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마.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2.3.3.)**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력

5.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1.28.)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된 자격증 제외)

직무관련 자격증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 기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나.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라. 응시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 공통 】

- 응시자격요건(자격·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2.3.3.)**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경력은 불인정함. ※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시간(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통해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증명서는 직인날인,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

【 우대요건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01.2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관련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가산점 】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차등하여 배점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②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평정순위 결정>

-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의함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2. 1. 26.(수) ~ 1. 28.(금)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우편 접수처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2층)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보건의직 응시원서 재중) (접수문의 : 063-238-2213)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이력서상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응시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 26.(수)~1. 28.(금)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24.(목)	3. 3.(목)	3.21.(월)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채용·인사정보/채용공고),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aas.go.kr> 우리원소식/채용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1 사용)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만 선택해야함
- * 작성목록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람

나.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2 사용) 1부

- * 본 공고문 첨부양식 응시원서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 전자수입인지도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3 사용) 1부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증빙이 되어야 경력 인정이 가능함

라. 자기소개서 (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4 사용)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5 사용) 1부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6)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시간 명확히 기재 * 관련분야만 제출

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카.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타.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1부

(본 공고문 첨부양식-붙임7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9.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마.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naa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아.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 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파.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2213)로 문의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응시코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A	보건관리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보건)	4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각 기관 운영지원과(전북 완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직원 보건관리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분석 -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유해요인 등 유해요인 조사 및 보건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우업,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정보관리능력 등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법령 지식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지식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의 경력을 제외한 이후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대상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사</td> <td>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td> </tr> <tr> <td>기사</td> <td>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td> </tr> </tbody> </table> <p>*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p>		구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기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구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기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직급 (직류)		성 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요건 (하나만 선택)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응시번호
	<input type="checkbox"/>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강령차 기재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원서(필수)	<input type="checkbox"/>
2. 이력서(필수)	<input type="checkbox"/>
3. 자기소개서(필수)	<input type="checkbox"/>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input type="checkbox"/>
5.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필수)	<input type="checkbox"/>
6.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필수)	<input type="checkbox"/>
7. 우대요건 해당하는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8. 주민등록초본(남성 병역사항 기재본)(필수)	<input type="checkbox"/>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0.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input type="checkbox"/>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란에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붙임 2]

응시원서

본인은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7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직류)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보건)	응시 코드	A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보건)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직류)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직류)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직류)을 기재함
<예,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보건)>
3. 응시코드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응시코드를 기재함
<예, A>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2페이지 이상 관련 근무실적 위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2페이지 이상 작성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